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 신설 등〉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40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 신설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25.
3. 회 부 일 : 2025.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지방재정법」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타당성 심사의 경우에도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대한 예외적 범위가 커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 신설 등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원칙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신설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33조제3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u>제3조의2(예산 편성·집행의 기본 원칙)</u>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u>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¹⁾.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²⁾.

1)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포함 사항>

구분	내 용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 재정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은 현행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른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해당 원칙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상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해당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³⁾,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회계

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 단위로 수립되는 재정 전반에 관한 계획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인 성과관리를 이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재정건전성은 이미 통합재정수지, 재정여건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 「지방재정법」 제3조와 중복된다는 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 및 재정건전성을 포함하는 것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통일성, 지표 도입의 필요성·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7. 삭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